



기관소개 |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열람·활용 및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하에 설치된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입니다. | 창조적인 기록문화의 산실 | Presidential Archives

기관소개

- ▶ 환영합니다
- ▶ 비전/미션
- ▶ 연혁
- ▶ 조직안내
- ▶ 주요기능 및 업무
- ▶ 법령 및 정책

○ 법령 및 정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목적

- ▣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

→ 제정경과

- ▣ 2005. 10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안)’을 확정하고 세부과제로 ‘대통령기록관리 법제 정비’ 제시
- ▣ 2005. 10 : 대통령기록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국가기록원 중심으로 T/F 구성
- ▣ 2007. 04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 2007. 07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7.26) 및 시행(7.28)

→ 주요내용

- ▶▶▶ 대통령기록물 소유권 및 범위 구체화 (제2조, 제3조, 제26조, 부칙 제3조)
 - ▣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권한대행·당선인 포함)과 그 보좌·자문·경호 및 대통령직 인수기관이 생산한 기록물 및 대통령상징물
 - ▣ 대통령기록물의 국가소유 원칙으로 국가적 관리체계 확립
 - ▣ 대통령의 개인기록물 및 전직 대통령 기록물 수집·관리
- ▶▶▶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 구축(제7조 및 제8조)
 - ▣ 대통령의 직무관련 정책결정 등 입안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 및 비전자기록의 전자적 관리
- ▶▶▶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관리프로세스 정립 (제10조~제13조)
 - ▣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
 - ▣ 임기종료 6월전부터 임기종료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 ▶▶▶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활용 (제16조)
 - ▣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원칙 및 이관 시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이관
 -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시점부터 매 2년마다 재분류 실시 및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경과 시 공개원칙
- ▶▶▶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보호체계 구축 (제17조)
 - ▣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가능
 -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위험 초래, 국민경제 안정 저해 등이 우려되는 기록물 대상으로 보호장치 마련
 - 국회 재적 의원 2/3의 찬성의결, 고등법원장의 영장 제시, 직원의 기록관리 업무 수행의 경우에는 열람 등 가능
- ▶▶▶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 제6조)
 - ▣ 목적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
 - 심의 대상 : 대통령기록관리 기본정책,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조치 해제,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등
 - 구성 : 9인 이내로 하되, 대통령기록관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2 이상 위촉
 - ▣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명시 (제6조)
 - 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 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독립적 운영 (제21조~제25조)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 설치 의무화
-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보호기능의 전문적·독립적 수행
 - 기본계획 수립, 수집·평가·공개,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등
- 대통령기록관장의 사무총괄·지휘감독권 및 임기(5년) 명시
- 개인·단체가 특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설을 건립하여 국가 기부 채납시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인정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취지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민감한 중요기록물을 보존하지 않았던 폐단을 없애고 국가의 중요 자산인 대통령기록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기록에 대해 일정기간 열람·사본 제작 등의 금지는 물론, 다른 법률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를 말함

→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유형)

-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 열람·사본 제작,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 *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됨
-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 * 궁극적으로 대통령(국가수반)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을 보호하는 제도는 외국에도 존재함. 독일과 프랑스는 대통령기록물을 각각 30년, 60년 동안 비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와 유사한 '접근제한기록제도'를 운영하며 대통령이 지정하는 경우 12년 동안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



기관소개 |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열람·활용 및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하에 설치된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입니다. | 창조적인 기록문화의 산실 | Presidential Archives

기관소개

- ▶ 환영합니다
- ▶ 비전/미션
- ▶ 연혁
- ▶ 조직안내
- ▶ 주요기능 및 업무
- ▶ 법령 및 정책

○ 법령 및 정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목적

- ▣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

→ 제정경과

- ▣ 2005. 10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안)’을 확정하고 세부과제로 ‘대통령기록관리 법제 정비’ 제시
- ▣ 2005. 10 : 대통령기록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국가기록원 중심으로 T/F 구성
- ▣ 2007. 04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 2007. 07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7.26) 및 시행(7.28)

→ 주요내용

- ▶▶▶ 대통령기록물 소유권 및 범위 구체화 (제2조, 제3조, 제26조, 부칙 제3조)
 - ▣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권한대행·당선인 포함)과 그 보좌·자문·경호 및 대통령직 인수기관이 생산한 기록물 및 대통령상징물
 - ▣ 대통령기록물의 국가소유 원칙으로 국가적 관리체계 확립
 - ▣ 대통령의 개인기록물 및 전직 대통령 기록물 수집·관리
- ▶▶▶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 구축(제7조 및 제8조)
 - ▣ 대통령의 직무관련 정책결정 등 입안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 및 비전자기록의 전자적 관리
- ▶▶▶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관리프로세스 정립 (제10조~제13조)
 - ▣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
 - ▣ 임기종료 6월전부터 임기종료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 ▶▶▶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활용 (제16조)
 - ▣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원칙 및 이관 시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이관
 -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시점부터 매 2년마다 재분류 실시 및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경과 시 공개원칙
- ▶▶▶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보호체계 구축 (제17조)
 - ▣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가능
 -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위험 초래, 국민경제 안정 저해 등이 우려되는 기록물 대상으로 보호장치 마련
 - 국회 재적 의원 2/3의 찬성의결, 고등법원장의 영장 제시, 직원의 기록관리 업무 수행의 경우에는 열람 등 가능
- ▶▶▶ 대통령기록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 제6조)
 - ▣ 목적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
 - 심의 대상 : 대통령기록관리 기본정책,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조치 해제,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등
 - 구성 : 9인 이내로 하되, 대통령기록관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2 이상 위촉
 - ▣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명시 (제6조)
 - 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 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독립적 운영 (제21조~제25조)

-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 설치 의무화
- ▣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보호기능의 전문적·독립적 수행
 - 기본계획 수립, 수집·평가·공개,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등
- ▣ 대통령기록관장의 사무통할·지휘감독권 및 임기(5년) 명시
- ▣ 개인·단체가 특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설을 건립하여 국가 기부 채납시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인정

개인정보 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 저작권 보호정책
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398 TEL : 031-750-2189 | FAX : 031-750-2239
COPYRIGHT © 2008 PRESIDENTIAL ARCHIVES. ALL RIGHT RESERVED.



Page Info - http://www.pa.go.kr/intro/policy.htm

General Media Permissions Security

☰ 동영기록관 ☰

Address: http://www.pa.go.kr/intro/policy.htm
Type: text/html
Render Mode: Quirks mode
Encoding: EUC-KR
Size: 12.35 KB (12,642 bytes)
Modified: 2008년 7월 16일 수요일 14:57:27

☐ Meta (1 tag)

Name	Content
Content-Type	text/html; charset=euc-kr

Security information for this page

This web site does not supply identity information.
Connection Not Encrypted

More



기관소개 |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열람·활용 및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하에 설치된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입니다. | 창조적인 기록문화의 산실 | Presidential Archives

기관소개

- ▶ 환영합니다
- ▶ 비전/미션
- ▶ 연혁
- ▶ 조직안내
- ▶ 주요기능 및 업무
- ▶ 법령 및 정책

○ 법령 및 정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목적

- ▶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

→ 제정경과

- ▶ 2005. 10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안)’을 확정하고 세부과제로 ‘대통령기록관리 법제 정비’ 제시
- ▶ 2005. 10 : 대통령기록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국가기록원 중심으로 T/F 구성
- ▶ 2007. 04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 2007. 07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7.26) 및 시행(7.28)

→ 주요내용

▶▶▶ 대통령기록물 소유권 및 범위 구체화 (제2조, 제3조, 제26조, 부칙 제3조)

- ▶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권한대행·당선인 포함)과 그 보좌·자문·경호 및 대통령직 인수기관이 생산한 기록물 및 대통령상징물
- ▶ 대통령기록물의 국가소유 원칙으로 국가적 관리체계 확립
- ▶ 대통령의 개인기록물 및 전직 대통령 기록물 수집·관리

▶▶▶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 구축(제7조 및 제8조)

- ▶ 대통령의 직무관련 정책결정 등 입안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 및 비전자기록의 전자적 관리

▶▶▶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관리프로세스 정립 (제10조~제13조)

- ▶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통보
- ▶ 임기종료 6월전부터 임기종료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활용 (제16조)

- ▶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원칙 및 이관 시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이관
-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시점부터 매 2년마다 재분류 실시 및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 경과 시 공개원칙

▶▶▶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보호체계 구축 (제17조)

- ▶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가능
 -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위험 초래, 국민경제 안정 저해 등이 우려되는 기록물 대상으로 보호장치 마련
 - 국회 재적 의원 2/3의 찬성의결, 고등법원장의 영장 제시, 직원의 기록관리 업무 수행의 경우에는 열람 등 가능

▶▶▶ 대통령기록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 제6조)

- ▶ 목적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
 - 심의 대상 : 대통령기록관리 기본정책,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조치 해제,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등
 - 구성 : 9인 이내로 하되, 대통령기록관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2 이상 위촉
- ▶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명시 (제6조)
 - 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독립적 운영 (제21조~제25조)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 설치 의무화
-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보호기능의 전문적·독립적 수행
 - 기본계획 수립, 수집·평가·공개,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등
- 대통령기록관장의 사무총괄·지휘감독권 및 임기(5년) 명시
- 개인·단체가 특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설을 건립하여 국가 기부 채납시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인정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취지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민감한 중요기록물을 보존하지 않았던 폐단을 없애고 국가의 중요 자산인 대통령기록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기록에 대해 일정기간 열람·사본 제작 등의 금지는 물론, 다른 법률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를 말함
- ※ 국가수반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을 보호하는 제도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도 존재함. 독일과 프랑스는 대통령기록물을 각각 30년, 60년 동안 비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와 유사한 '접근제한기록제도'를 운영하며 대통령이 지정하는 경우 12년 동안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유형)

-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 열람·사본 제작,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 ※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됨
-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Page Info - http://www.pa.go.kr/intro/policy.htm

General Media Permissions Security

☰ 동영기록관 ☰

Address: http://www.pa.go.kr/intro/policy.htm

Type: text/html

Render Mode: Quirks mode

Encoding: EUC-KR

Size: 16.7 KB (17,096 bytes)

Referring URL: http://www.pa.go.kr/

Modified: 2008년 7월 17일 목요일 18:22:47

☐ Meta (1 tag)

Name	Content
Content-Type	text/html; charset=euc-kr

Security information for this page

This web site does not supply identity information.

Connection Not Encrypted

More

알려드립니다

-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기관소개란’에 게재된 『열람·사본제작,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 항목은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사본제작, 자료제출요구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 여기에 전직 대통령의 열람을 허용하도록 한 동 법 제18조의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였습니다.
- 대통령기록관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 동 항목의 마지막 줄에 있던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 앞으로 대통령기록관은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X CLOSE

